

2012 다문화교육 관계자 연수



| 일 시 | 2012. 5. 16.(수)

| 장 소 | 김해도서관 시청각실



2012. 다문화교육 관계자 연수 일정표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비 고
13:00~13:30	30분	등 록	
13:30~13:35	5분	개회 및 국민의례	
13:35~13:40	5분	인사말씀	
13:40~15:20	100분	특 강 「탈북청소년 교육의 이해」	강 구 섭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학교지원팀장)
15:20~15:30	10분	휴 식	
15:30~16:20	50분	사례발표 1 「그들은 무엇에 웃고 우는가? : 다문화가정 학생·학부모·교사」	박 인 숙 (양산 용연초등학교 교사)
16:20~17:10	50분	사례발표 2 「나를 찾는 여행 : 탈북학생 지도 우수사례」	박 현 주 (부산 향만물류고등학교 교사)
17:10~17:20	10분	질의 및 답변	
17:20~17:30	10분	폐 회	



□ 특 강

탈북청소년 교육의 이해 5

강 구 섭(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학교지원팀장)

□ 사례발표 1

그들은 무엇에 웃고 우는가? : 다문화가정 학생 · 학부모 · 교사 25

박 인 숙(양산 용연초등학교 교사)

□ 사례발표 2

나를 찾는 여행 : 탈북학생 지도 우수 사례 31

박 현 주(부산 향만물류고등학교 교사)

□ 부 록

다문화가족지원법 47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53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연락처 65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70



특 강

탈북청소년 교육의 이해

강 구 섭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학교지원팀장)

탈북청소년 교육의 이해

강 구 섭

(KEDI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학교지원팀장)

I. 탈북청소년의 현황과 특성

공교육 붕괴로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채 북한을 떠나 장기간의 탈북 과정을 거쳐 한국에 들어온 탈북청소년들은 새롭게 시작하는 남한생활, 학교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탈북 전후 과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학습결손이나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청소년으로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남긴 심리·정서적 상처, 새로운 사회에서 겪는 사회문화적 충격, 남한 사회의 탈북청소년에 대한 편견 등 많은 문제들이 탈북청소년의 남한생활 적응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작용한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북한을 떠나 남한에 정착한 탈북청소년들이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려 미래 통일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남한 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국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인 지원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상황과 환경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 지원을 통해 학교생활 초기단계에 잘 적응하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1. 북한이탈주민 및 탈북청소년 현황

국내에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경제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기아, 기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북한주민의 대규모 탈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2000년대 초반 무렵부터 매년 1천여 명이 입국하였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입국 규모가 매년 2천명을 넘고 있다. 2011년

8월까지 약 2만 1천여 명이 남한에 입국하였으며 그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북한이탈주민 한국입국 현황

구분	~'98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합계
남	829	563	506	469	626	423	509	570	612	666	578	242	6,593
여	118	480	632	812	1,268	960	1,509	1,974	2,197	2,261	1,798	589	14,598
합계	947	1,043	1,138	1,281	1,894	1,383	2,018	2,544	2,809	2,927	2,376	831	21,191
여성비율	23%	46%	56%	63%	67%	69%	75%	78%	78%	77%	76%	71%	69%

자료 : 통일부 정착지원과(~ '11.4)

북한이탈주민의 입국규모가 증가하면서 탈북청소년의 규모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20% 가량이 21세 이하의 학령기 탈북청소년으로 추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관련 법률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은 부모가 모두 북한이탈주민이고 북한에서 출생한 탈북청소년을 “보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재 초·중·고등학교, 특히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가운데는 부모 중 한 사람만 북한이탈주민인 경우가 많다. 통일부에서는 이들을 “비보호대상자”로 분류하여 공식적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도 교육 지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교육계에서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북한이탈주민인 경우, 탈북청소년으로 분류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부모나 다른 부양인 없이 남한에서 혼자 생활하는 탈북청소년도 있지만 대체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탈북청소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부모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탈북청소년의 삶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국내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생활 실태를 살펴보면 대체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2008년도 북한이탈주민의 소득수준을 파악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피조사자의 94% 가량이 월소득 150만원 이하의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66% 가량은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여상 외, 2008). 탈북청소년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520명의 설문 응답자

가운데 72% 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였다. 또 응답자의 83%가 월평균 150만원 이하의 낮은 소득 수준을 보였고, 부모의 40% 가량은 무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상황은 탈북청소년의 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 북한과는 매우 다른 새로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것처럼 탈북청소년들이 새로운 사회에서 학업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2011년 8월 현재 남한에는 2,020여명의 탈북청소년이 입국해 있다. 이 가운데 1,681명은 정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9% 가량에 해당하는 186명은 학교 밖 대안교육시설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나머지는 정규학교나 대안학교에 다니지 않고 검정고시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2005~2010년 탈북청소년 입국자수 및 재학생수 변화 추이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탈북청소년 수(6-20세)	841명	1,050명	1,319명	1,478명	1,711명	2,020명
학교재학생 수(6-20세)	474명	602명	966명	1,143명	1,417명	1,681명

* '11. 8 일자

<표 3> 2011년 탈북청소년 수학 현황

정규학교*			학교 밖 탈북청소년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안교육시설	기타	
1,020명(50.4%)	288명(14.2%)	373명(18.4%)	186명 (9.2%)	153명 (7.5%)	2,020 (100%)
1,681(83.2%)					

* ('11, 4월 기준), 주요 지역 현황 : 서울 526명(34.4%), 경기476명(26.9%), 인천 182명(10.2%)

표면적으로 보면 80% 이상의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에 재학 중이고, 대안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경우까지 포함하면 전체 탈북청소년의 90% 가량의 학생이 학교에 적을 두고 있어 학교를 통한 남한사회 적응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남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낯선 학교생활에서 탈북청소년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을 떠난 후 남한에 들어오기까지의 생사의 기로를 넘나드는 탈북과정, 긴 탈북과정에서 발생한 학습결손, 새로운 상황에서 직면하는 심리·정서적 문제, 남한사회에서 겪는 문화 충격 등으로 인해 남한 학교생활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2. 장기간의 탈북과정

탈북학생들은 중국·북한 접경지역을 이루고 있는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 북한을 빠져 나온 이후 한국에 도착하기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5~6년간의 긴 탈북여정을 거치게 된다. 중국 주재 각국 대사관, 영사관에 잠입하여 탈북신청을 하거나 위조여권을 만들어 탈북 후 수 개월 만에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중국을 벗어나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3국의 한국대사관으로 이동한다. 고비사막을 거쳐 몽골로 들어가거나 메콩강을 넘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거친 긴 여정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많다.



반중빈 기자 bjb@yna.co.kr / 20091224

[그림 1] 탈북청소년의 탈북경로

탈북 후의 탈출 생활은 많은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위험한 도피생활을 의미한다. 은둔생활 과정에서 자신이나 가족의 신분이 노출되어 중국의 공안이나 국경수비대에 발각될 경우,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어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들은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서 탈북생활을 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 장기간 노출되어 생활한 북한이탈주민은 남한에 입국한 후에도 계속 심리적 불안을 경험한다.

일부 탈북청소년들은 탈북 과정에서 가족을 잃는 경험을 하기도 하고 가족의 일부를 북한에 남겨 두고 온 것 때문에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일부의 경우는 탈북과정에서 부모님과 장기간 떨어져 생활하게 되기도 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다가 다시 재결합하였으나 서로 친근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간섭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불편함을 느끼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10년 가까이 부모와 떨어져 있다가 나중에 부모가 아이를 데려오면서 같이 살게 되었으나 부모가 새롭게 재혼한 것에 배신감을 느끼며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탈북과정에서의 타국 생활은 굶주림의 고통과 싸워야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신분 노출의 위험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워 연명하는 수준의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탈북과정에서 직면하는 이러한 모든 경험이 탈북청소년에게 커다란 정신적 심리적 상처를 남긴다. 이러한 상처로 인해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에 입국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전문적인 대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3. 학습결손

장기간의 탈북과정을 거치면서 탈북청소년들은 심각한 교육결손을 갖고 있다. 거처를 계속 옮겨 다니거나 쫓겨 다니고 숨어 생활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장기간의 탈북과정 동안 불규칙적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남한 입국 이후 규칙적으로 학교를 다니고 생활하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탈북청소년도 적지 않다. 어린 시절에 북한을 떠나 오랫동안 중국을 비롯한 타국에서 생활하다가 남한에 들어온 탈북청소년들은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고 중국어 등의 외국어만 구사할 수 있

는 경우도 있다. 북한이 아닌 중국 등에서 태어나 남한으로 입국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학습부재 상황을 오랫동안 경험한 탈북청소년들은 학습에 흥미를 잃은 경우가 많다. 교육, 학습보다 생존이 우선시되는 과정에서 적절한 학습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학습 자체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다. 오랜 기간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면서 일부 탈북청소년의 경우 “한국에 들어가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것이 그들에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다른 한편, 북한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교육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계속되는 경제침체, 식량난 등으로 인해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중단되었으며 교사에 대한 식량배급 및 봉급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업을 비롯한 학교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미 1990년대 이후부터 교육시설·기자재가 제대로 관리·공급되지 않고 있으며 교원과 학생의 상당수가 학교에 장기간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북한당국의 정상화 노력에 힘입어 부분적으로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학교 상황이 열악해 교과서가 학급당 5~6권만 공급되고 있으며 학기가 끝나면 수거하였다가 다음 학기에 재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교과서 사정이 이러한대 장비, 기자재 등 다른 교육 관련 시설의 사정이 어떠한 것인가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탈북청소년의 증언에 따르면 한 반에 60%에 가까운 학생이 집안 생계 등의 문제로 학교를 결석해, 교사가 학생 집을 다니며 학교에 나오도록 재촉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학교 교육 전반에서 학습결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학교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북한을 떠나 남한에 들어오기 까지, 장기간의 학습결손 상황에 놓여 있던 탈북청소년이 또래의 남한학생보다 현격히 떨어지는 학력수준을 보일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남한 초등학생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은 고사하고 한글이나 구구단도 익히지 못한 초등학교 연령의 탈북청소년이 적지 않다.

전체적으로 심각한 기초학력부진 상황을 보이는 가운데 10대 중후반의 고등학생 연령 이상 청소년의 경우, 특히 상황이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장기간의 학습결손 상황에 노출되었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0대 후반 이후 연령 청소년의 경우 또래집단 학년으로 배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 결과적으로 상급학교로 올라갈수록 탈북청소년의 학교부적응 현상은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학교로 갈수록 탈북청소년의 학교부적응 경험 사례가 많아지는 상황은 탈북청소년의 학교 중도탈락률을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전의 상황보다 현격히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남한출신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중도탈락률을 보이고 있다.

<표 4> 탈북청소년 연도별 중도탈락률 추이

(단위 : 명, %)

구 분		초	중	고	계
2007학년도	재학생 수	341	232	114	687
	중도탈락생 수	12	30	32	74
	중도탈락률	3.5	12.9	28.1	10.8
2008학년도	재학생 수	495	288	183	966
	중도탈락생 수	7	26	26	59
	중도탈락률	1.4	9.0	14.2	6.1
2009학년도	재학생 수	562	305	276	1,143
	중도탈락생 수	5	26	25	56
	중도탈락률	0.9	8.5	9.1	4.9
2010학년도	재학생 수	773	297	336	1,406
	중도탈락생 수	19	13	18	50
	중도탈락률	2.5	4.4	5.8	3.6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2011). '10 탈북청소년 교육관련 현황 조사'.

*중도탈락률 = 학교급별(연도별 중도탈락자 총수/연도별 재학생 총수) × 100

4. 심리 정서적 어려움

탈북 과정에서 극심한 공포상황을 직면하였거나 장기간 불안상황에 노출되어 있던 탈북청소년들은 남한 입국 이후에도 적지 않은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험난한 산이나 강을 건너는 목숨을 건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가족이나 친지 등의 사망 사건 등은 청소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매우 어려운 정서적, 심리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탈북과정에서 겪은 충격적 사건과 갈등, 탈북으로 인한 죄책감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리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것들이 경우에 따라 탈북청소년으로 하여금 타인에 대해 이상한 행동, 반응을 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탈북청소년의 일부는 학급 급우와의 관계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극도의 분노를 나타내는 외현화 문제를 갖고 있다. 외현화 문제란 감정이나 행동의 적절한 억제가 결여되어 과소 통제된 행동 즉, 타인에 대해 공격적 행동, 싸움, 비행 등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을 떠나 사선을 넘어 남한에 입국한, 심리적으로 매우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한 탈북청소년의 일부가 이전 경험의 영향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특정 상황에서 극단적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외현화 문제는 남한 거주 기간이 짧고 북한이탈 기간이 길수록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탈북과정에서 경험한 공포와 충격, 정신적 신체적 어려움이 탈북이라는 위기 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증세를 가져온다는 것도 연구를 통해 많이 알려졌다. 탈북청소년 또한 이러한 심리적 문제에서 예외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남한생활 초기, 탈북청소년들은 낯선 교실, 낯선 말씨 등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분위기 속에서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래 보다 나이는 많지만 부진한 기초학력 수준, 규칙적인 행동습관의 부재,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 자신을 더욱 위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학교생활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경험할 경우, 쉽게 좌절하거나 낙심하게 되고 자퇴하고 싶은 유혹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 주변에 학교를 그만둔 친구가 있고, 동급생들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더욱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 심

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소한 계기로 학교를 그만두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한다. 학교나 가정, 지역사회에서 누군가 ‘자신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붙이고 학업을 계속 이어가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학교를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극단적 공포를 수반한 탈북과정, 그로 인한 ‘후유증’, 남한생활 초기에 경험하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두려움,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크고 작은 좌절의 경험 등은 탈북청소년이 새로운 환경에서 건전한 정체성을 갖는데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학교에 편입한 탈북청소년의 다수가 자신이 북한출신이라는 것을 밝히는 것에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고 이 때문에 자신의 출신 관련 사항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사회에 북한이탈주민, 탈북청소년에 대한 부정적 정서, 거부감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분을 밝힌 후 불이익을 당할까봐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쪽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처럼 탈북청소년은 매우 복잡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갖고 있다.

심리 정서적 안정은 남한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청소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탈북청소년들이 학교에 순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사회 문화적 충격

북한과는 상이한 사회체제에서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탈북청소년들은 학교생활 초기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학교 체제의 차이, 자유로운 수업 분위기 등 낯선 학교 모습을 비롯해 치열한 경쟁, 성적에 대한 관심, 개인 과외에 의존하는 분위기, 개인주의적 태도 등 북한에서와는 다른 남한 학생들의 행동 양식이 남한생활 초반, 친구들과 어울리며 학교생활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끼는 요소로 작용한다. 학교를 비롯한 남한생활 전반에서 경험하는 용어, 언어의 차이 등도 새로운 생활에서 이질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것들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재학하는 학생보다 주로 고학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화충격을 경험한 탈북청소년들은 대화를 기피하고 경계하거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기도 한다. 학급 친구들의 생활

방식을 잘 이해하지 못해 갈등을 느끼기도 하고 때때로 감정처리가 미숙한 나머지, 힘으로 압도하려고 하기도 한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남한과는 다른 행동양식을 보이는 이질적인 존재로 남한 친구들에게 인식되면서 많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II. 탈북청소년 교육 지도

1. 초기 단계

탈북청소년이 탈북과정, 탈출생활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학교생활, 남한생활에 순조롭게 적응하게 하기 위해 입국 초기 단계부터 종합적인 지원과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남한에 입국한 탈북청소년은 정부합동조사기관에서 일정 기간 조사를 받은 후 하나원(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에서 3개월간 남한사회 기초적응 교육을 받는다. 이때 초등학생은 하나원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삼죽초)에서 위탁 교육을 받고, 중·고등학생은 하나원 내에 있는 학교(하나돌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3개월간의 생활을 마치고 정착지 남한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탈북청소년들에게 매우 긴장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같은 처지의 탈북청소년과 함께 지내던 하나원 생활이나 그곳에서 다니던 학교와 달리 정착지에서는 남한학생들이 대다수인 학교에 다녀야 하기 때문이다.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남한 학교에 발을 디딘 탈북청소년이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의 선생님들께서 따뜻하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청소년은 남한학교 경험이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학교생활에 대한 매우 적은 수준의 정보만 갖고 있고, 남한학생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런 학교생활의 여러 가지 규칙, 개인에게 요구되는 태도나 행동 등이 탈북청소년들에게는 모두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들이다.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한, 극도로 긴장된 상황을 잘 보내고 심리적 안정을 느끼며 학교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교사의 적극적이면서도 지혜로운 태도가 요구된다.

2. 학력 진단 및 학년 배치

정착지의 남한학교에 편입학한 탈북청소년은 기초학력진단을 통해 수준에 맞는 학년에 배치되어야 한다. 주지한 바와 같이 탈북청소년은 탈북 전후시기에 갖게 된 개인의 경험에 따라 학력수준에서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탈북청소년용으로 개발된 기초학력 평가도구를 통해 평가를 실시한 후 적절한 수준의 학년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단평가를 통해 학년 배치를 할 때, 탈북학생의 연령과 배치 학년 간의 차이가 너무 크면 학급에서 다른 급우들과 관계를 맺고 학습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2년 내에서 학년 배치가 이뤄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탈북학생을 지도하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그렇지만 장기간의 제3국 체류과정 등으로 인해 학생 연령의 2년 내외로 학년을 배치하는 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처럼 탈북학생이 갖고 있는 기초학력수준과 연령대 간에 큰 차이가 있다면 정규학교가 아닌 대안학교 진학 등의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기초학습 지도

탈북학생 지도에서 접하게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기초학습지도라고 할 수 있다. 탈북학생 개인 간의 격차가 매우 크고 사례가 다양해 하나의 정형화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 하다. 일반적으로 탈북학생들은 국어, 영어, 사회, 한문 등 다양한 과목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수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교육과정 내용이 북한과 달라 학습 내용에서 어려움을 느끼며 특히 영어, 컴퓨터 학습 경험이 없어 수업을 따라 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인문사회과목의 이해 수준이 낮은 것도 적지 않은 문제로 인식된다.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으로 초기에는 국어 과목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문제가 극복되는 반면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수학, 영어 과목에서 많은 어려움을 갖게 된다. 특히 중·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움이 커지고 학습부진이 누적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학습동기 상실, 학력미달, 중도 탈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탈북청소년의 상황과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학력수준의 차이가 매우 큰 중·고

등학생을 위해 개인별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해야 한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나 탈북학생에 대한 1:1 멘토링 지도가 효과적이다. 탈북청소년들은 새로운 학교생활, 학습이 가져오는 심리적 부담감으로 주눅이 들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매우 자존심이 강하여 교사의 태도나 말 한마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러한 탈북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학습과정에서 가장 흔히 부딪치는 어려움은 남북한 언어, 용어의 차이나 학습 내용의 수준 등에서 발생한다. 학습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 탈북청소년의 수준을 고려하여 학습내용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청소년 교육 지원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관은 탈북학생을 위한 교과서, 맞춤형 교재, 탈북학생 지도 매뉴얼 등 탈북학생을 지도하는데 유용한 다양한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기관에서 개발된 다양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희망적인 사실은 상당수의 탈북청소년들이 북한과 중국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남한에서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고, 한국에 온 것을 매우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북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하는 학습동기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탈북청소년들이 이러한 마음자세를 바탕으로 좋은 학업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정체성의 문제

북한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또 다른 매우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탈북청소년의 정체성 문제 즉, 북한출신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탈북청소년들은 자신이 북한출신이라는 것을 밝힐 경우 아이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거나 나쁘게 보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불안을 갖고 있다. 그래서 북한출신이라는 것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 일반학교에 다니는 탈북학생의 60% 이상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탈북학부모 또한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 초·중학생의 경우 밝히는 것보다 그렇지 않는 것이 훨씬 좋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판

단된다. 잘 지내다가도 알려지는 순간부터 또래 친구들로부터 소외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된 후인 고등학교 때에 알리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탈북학생을 오랫동안 접해 온 전문가들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 가운데 일부는 “탈북학생이 수년 이상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생활하는 것이 아이들에게 정서적, 심리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가져 올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한다.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속에서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 즉 자신의 모습을 감추고 사는 것이 심각한 심리적 정서적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의 자연스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을 통해 학교생활에 적응해 가는 것 같지만 자칫 이중적 인성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언젠가 한번은 직면해야 할 상황이라면 학급의 급우들과 협의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등의 수용적 분위기 조성한 가운데 탈북학생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자신의 입장을 당당히 밝히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남한생활 적응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자신의 신분을 밝힌 후 친구들로부터 소외를 당해 커다란 상처를 입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좋다고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좋은지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교사의 입장에서는 탈북청소년 자신이 자신의 상황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수용하여 자신에 대해 긍정적 자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북한출신이라는 것을 밝히기로 결정한 경우, 이것이 또래관계 형성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극 주의해야 한다.

5. 생활 지도

북한교육의 붕괴, 제3국 은신생활 등의 상황 속에서 정상적 학교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탈북청소년들은 기초학습능력부진 뿐 아니라 남한 학교에서 요구하는 규칙적인 생활을 따라 가는 것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규칙을 내면화하여 그에 따라 일상생활을 하는 태도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다. 탈북학생을 지도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아침에 일어나 학교에 등교하고 수업을 마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리듬을 잘 유지하는 것, 학급·학교에서 규칙을 지키고 급우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법 등 다양한 일상의 미시적 영역에서 크고 작은 행위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제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생활습성을 버리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태도가 함양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청소년들은 남한생활 1년차 때 보다 2~3년째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4~5년차 이후로 가서는 다시 그러한 어려움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탈북청소년의 학습적응 태도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초기 1~3년의 기간에 적극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6. 분리교육과 통합교육의 적절한 활용

탈북청소년이 살아가야 할 공간이 한국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이 남한학생과 어울려 정규학교에 다니는 과정을 통해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80% 가량의 탈북청소년들이 일반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반학교 생활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탈북청소년의 경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초학력 수준을 보이는 경우, 무연고 학생의 경우, 기타 학습장애 등의 특별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 등이 그에 해당된다. 이러한 경우 남한학생과의 통합교육 뿐 아니라 북한 학생만의 분리교육, 대안학교 등 다양한 방식의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착지 일반 학교는 통합교육 방식이라고 볼 수 있고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안학교는 분리교육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연고 학생의 경우에는 교육과 보육의 기능을 동시에 갖춘 기숙형태의 교육기회가 필요하다. 교사는 학생의 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학생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형태의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지만 모든 학생에게 그러한 방법을 취할 수는 없다. 탈북학생으로만 구성된 대안학교, 특성화 학교가 여러 가지 장점도 갖고 있지만 일

반 사회나 남한학생과의 단절을 가져온다는 측면에서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처럼 하나의 정형화된 해법은 있을 수 없으며 학생의 개인 상황에 따라 적절히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학교, 민간교육시설, 대안학교, 복지관 등의 다양한 기관의 유기적 협력 속에서 탈북청소년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교육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7. 탈북청소년 학부모 지도

탈북청소년 지도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탈북청소년 학부모 지도의 문제이다. 북한의 양육방식에 익숙한 북한이탈주민 학부모는 이전 체제와는 다른 남한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자녀를 지도해야 할지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이해를 갖고 있지 않다. 한국생활 연한에 따라 다르지만 한국사회, 교육 등에 대한 지식, 정보의 부족으로 어떻게 학부모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판단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당장 학교에서 날아오는 가정통신문만 봐도 모르는 단어가 많은, 자신이 먼저 남한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탈북학부모들은 자녀교육과 관련하여 직면하는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느낀다. 이로 인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에 따라 쉽게 바뀌고 휩쓸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탈북청소년을 학급에 둔 교사는 탈북학생 학부모를 대하는데 있어서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학교, 학급에서 이뤄지는 여러 가지 활동, 행사에 대한 안내부터 준비물 준비 등에 이르기 까지 탈북학생의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학생 학부모의 숫자가 많은 경우 그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오리엔테이션을 갖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학부모 스스로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신장시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언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공공기관, 복지관,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하도록 권유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학부모가 남한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때 이것이 자녀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부모 교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돕는 것이 교사에게 주어진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자녀에게 좋은 미래를 열어주고 싶은 마음은 탈

북청소년 학부모 또한 남한부모와 다르지 않다. 이들이 학부모로서,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탈북학생의 교사가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8. 진로진학지도

탈북청소년 또한 남한청소년과 마찬가지로 진로진학문제를 놓고 많은 고민을 한다.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열심히 탐색하고 고민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10대, 20대 초반 이러한 진로진학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이 어떠한 적성과 재능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은 가운데 막연히 사회적으로 선망되는 진로나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지극히 제한된 지식과 정보만 소유한 채 주변의 이야기를 듣고 쉽게 진로를 결정하거나 바꾸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적성, 능력과는 무관한 대학에 입학하거나 진로를 선택했다가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그러한 과정 자체를 한국사회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사전에 충분한 진로진학관련 오리엔테이션 기회를 제공하여 각자에게 적합한 길을 찾아간다면 그만큼 더 남한사회 적응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탈북청소년이 자신이 갖고 있는 관심과 적성, 능력은 무엇이고 그에 따라 어떠한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양한 체험학습의 기회, 사람들과 만남 등 다양한 형태로 진로진학 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막연히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좋은 진로·직업이 아닌 자신에게 알맞은 진로·직업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결 론

탈북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교사의 역할이 대단히 막중하다. 입국 초기 단계, 학습지도, 생활지도, 탈북청소년의 신분을 밝히는 커밍아웃의 상황에

서 교사의 태도 하나 하나가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직접적 영향을 끼친다. 교사가 탈북청소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느냐가 남한 학생이 탈북청소년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탈북청소년 또한 학교생활에 만족도를 느끼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교사의 열의를 들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담당 교사는 탈북청소년 문제가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한 이해와 탈북청소년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학교, 학급에서 탈북청소년의 적응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특히 부모가 없는 무연고 탈북학생들의 경우 교사의 역할이 매우 지대하다. 이들을 위해 교사는 심리적 지지자, 학업지원자, 고민상담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정이 해체되거나 안정되지 못한 경우가 많은 탈북청소년이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 학급 담당 교사 개인이 이러한 모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정착지 각 지역에서 탈북주민의 적응을 돕는 지역 하나센터, 복지관, 대안학교, 그룹홈 등 다양한 시설이 탈북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지원정책과 지원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문제를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탈북청소년 지도를 담당하는 교사는 또한 남한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지도를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투나 억양 등으로 인해 탈북자라는 것이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탈북청소년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교사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 남한학생이 탈북청소년을 비웃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할 경우 교사는 이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한학생과는 다소 다른 탈북학생의 말씨, 태도나 부족한 기초학력이 절대로 무시하거나 비웃음을 사야 할 행동이 아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문제라는 것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전반적으로 남한학생이 탈북학생을 이해하고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북한학생의 경우도 남한학생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 학생이 상대방이 갖고 있는 차이와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를 수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례발표 1

그들은 무엇에 웃고 우는가?
: 다문화가정 학생 · 학부모 · 교사

박 인 숙

(양산 용연초등학교 교사)

그들은 무엇에 웃고 우는가?

- 다문화가정 학생 · 학부모 · 교사 -

박 인 숙

(양산 용연초등학교 교사)

1.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명'시대 / 다문화사회 어떠한가?

/ ** 4.11 총선 이후 '이자스민 당선자 때리기'를 보면서

가. 원론적 수준에 머무는 국제이주와 다문화 주의

☞ 구체적, 현실적 문제에 대한 실천적 해법을 찾아야

나. 단순 차별 금지의 소극적 입장

☞ 소수집단의 문화권과 사회권을 보장하는 적극적 인권보호로 전환해야

다. 다수·주류 집단과 소수·비주류 집단 간의 융합여건 미비

☞ '생활인'의 개념으로 사회적 연대와 공존의 논리가 확대되어야

2. 그들이 바라는 것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11. 다문화교육우수사례공모전작품집』과 충청남도교육청의 2010 다문화교육생활체험수기공모사례집 『내 아이가 꿈꾸는 따뜻한 세상』에 나타난 다문화 가정 학생, 학부모, 지도교사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 학생

- 언어발달지체로 인한 학습이해도 저하

2012. 다문화교육 관계자 연수 자료집

- 가정의 교육적 기능 취약으로 인한 친구 따돌림
- 신분상의 불안(불법체류 등)으로 인한 학교생활의 불안정
- 언어능력 부족으로 학습부진 : 의사소통은 문제없으나, 독해와 어휘력, 쓰기, 작문능력에서 학력 저하
- 자아개념 및 자아정체성의 혼란
- 또래집단으로 부터의 따돌림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정서적 충격

나. 학부모

-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별
- 언어 소통의 한계에서 오는 실생활에서의 갈등
- 상대적인 경제수준의 격차
- 자녀교육의 한계 : 자녀양육문제, 입학준비 및 가정교육지원 미비, 학교생활 부적응, 다양한 교육정보 접촉의 한계
- 결혼 목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가정문제

다. 교사

- 기회의 부족 : 연구, 연수, 토론, 협의의 장 불비 ⇨ 지도력 약화
- 폐쇄적 가정 환경으로 소통의 기회 단절
- 어머니 중심의 학교 참여
- 주5일수업제 시행에서 가장 중요한 양질의 프로그램 미흡

3. 다문화 10인이 말하는 한국생활 고충과 희망1)

가. 가난한 나라에서 온 사람, 결혼하러 온 사람이라는 편견

/ 유빅토리아(29), 우즈베키스탄, 연세대 대학원 한국학 석사과정

나. 백인과는 전혀 판판의 유색 인종 편견

/ 카지 라피크(36), 방글라데시, 여행사 대표

1) 동아닷컴 2012.04.19

다. 문화나 종교적인 부분에서 배려가 필요

/ 유미려(36), 말레이시아, 서울 석촌초등학교 교사

라. 더 다양한 한국인이 문화적 경험의 폭을 넓혀야

/ 샤리크 사이드(47), 파키스탄, ㈜뉴팩코리아 대표

마. 출신국가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인식

/ 칼린 마나시에프(24), 불가리아, 건국대 산업디자인과 4학년

바. 특별대우 자체가 차별이다

/ 출롱체첵(38), 몽골,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팀 주무관

사. 심한 차별이나 특별한 보호보다는 그저 같은 이웃으로 대해주길

/ 앵 잠란(27), 캄보디아, 주부

아. 특히 이들의 2세, 3세가 잘 정착하도록 돕는 시스템을 갖춰야

/ 아나벨 카스트로(45), 필리핀, 경찰관(경장)

자. 버스와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으면 승객들은 피한다

/ 프레마탈(42), 스리랑카, 한국외국인력지원센터 근무

차. 술집이 아니라도 어울릴 수 있는 대학문화의 다양화

/ 장허(姜赫·23), 중국, 한국외국어대 언론정보학과 3학년

4. 어떻게 접근하고 지도할 것인가?

가.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의 방향

1) 동화주의(melting pot)에서 다문화(다종교)주의(salad bar)로

- 결혼이민자는 신한국인, 다문화가정 자녀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 부모 나라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

2) 수혜자 취급에서 봉사자 육성으로

2012. 다문화교육 관계자 연수 자료집

- 일하고 책임지는 복지 개념 도입
- 각자의 능력과 영역에서 무엇이든 환원하면서 통합되는 사회
- 3) 특별교육에서 사회통합교육으로
 - 교실에서 다른 아동들과 동일하게 교육
 - 다문화가정 자녀들만을 위한 학교 개설의 의미가 크지 않음
- 4) 문제아동 교육에서 국가 인적자원 교육으로
 - 다문화 세계에 대한 체험적 이해(최소 2중 언어 사용, 2개국 문화 보유)
 - 학교 적응정책 차원 교육과 학습부진아 교육복지를 넘어, 국제 특수 지역의 다문화 전문가로서 인재 양성의 교육정책 필요(국제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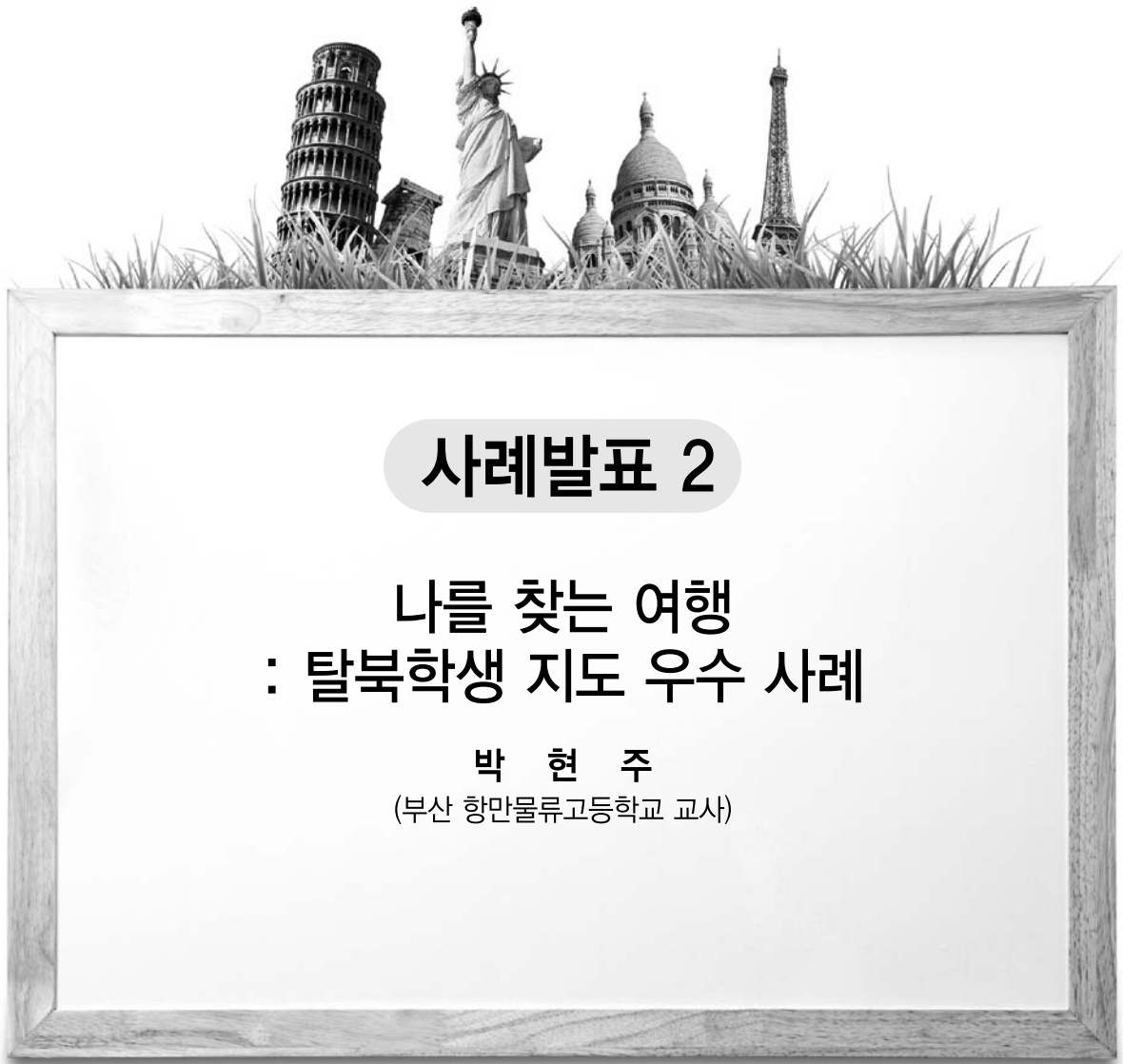
나. 더불어 함께 하는 삶을 위하여

- 1) 다문화가정의 측면
 -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와 학부모의 자녀교육지원 역량 강화
- 2) 단위학교 측면
 - 다문화교육 관련 교사의 전문성 제고와 다문화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다문화 교육기반 구축, 학교 교사의 관심과 배려가 가장 중요
- 3) 사회의 교육지원 측면
 - 일반인의 다문화이해 제고와 국제이해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
- 4) 국가적 측면
 - '국민통합'이라는 거시적 안목의 정책과 투자

.....

♣ 참고 자료

- 인천광역시교육청(2011), 2011. 다문화교육우수사례공모전작품집
- 충청남도교육청(2010), 『내 아이가 꿈꾸는 따뜻한 세상』 2010 다문화교육생활 체험수기공모사례집



사례발표 2

나를 찾는 여행 : 탈북학생 지도 우수 사례

박 현 주

(부산 향만물류고등학교 교사)

나를 찾는 여행 : 탈북학생 지도 우수사례

박 현 주

(부산 향만물류고등학교 교사)

1. 학생 기본정보

학 교	부산향만물류고등학교
학 년	3학년
성 별	여
출 생 년 도	1991년 1월
출 생 지	√ ① 북한 ② 중국
입 국 년 도	2003년
동 거 가 족	어머니, 언니, 본인

2. 멘토 교사 기본정보

학생과의 관계	1. 같은 학교 전문상담교사 2. 대학생 학생 멘토링
성 별	남
교직연수	12년
해당학교 근무연수	5년
탈북학생 지도 연수	3년
1:1 멘토링 수행 경험	2010년 3월 2일~2011년 12월(현), 1명, 심리정서지원분야 및 학습지원분야인 신나는 학습클리닉과 나의 꿈! 나의 미래! 를 연간 지도 및 활동을 통해 학교적응력과 학습능력 향상을 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체성확립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자신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학교적응과 학습에 대한 흥미도 상당히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대학생 학습 멘토링은 2011년 4월부터 시행되어 최00학생의 기초학력제고에 노력을 기하고 있다.
탈북학생관련 연수경험	1. 탈북학생 시도 전문교사심화연수, 서울교육대학교, 30시간, 1월 26일~28일, 북한의 실상에 대한 영상과 탈북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사례보고가 도움이 되었고 또한 우수사례와 학교와 탈북학생과 청소년 관련기관을 탐방하는 시간이 아주 유익하였습니다. 2. 부산 경남권 탈북학생 시도 교원직무연수, 부산교육대학교 15시간, 4월 22일~23일, NK교사와의 만남, 탈북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탈북학생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앞으로도 이러한 실제적인 교사와 학생과의 만남을 통해 현직교사가 좀더 넓은 안목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3. 강원도사회과연수(15시간), 전국교장교감연수(15시간)

3. 학생 특징

가. 성격

최00 학생의 성격은 수줍어 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사람들과 사귀는 것을 피하는 편이고 강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이거나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삶에 대해 만족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별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는 경향도 보이고 있습니다. 감정보다는 오히려 사실 또는 문제 자체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 학생이고 대담하고 강인하며 결단력이 있고 모험심이 강하지만 타인을 세심하게 배려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의존적이고 감정과 행동을 억제하며 수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지지해 주기를 바라거나 요구하고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들을 따라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이나 기대 혹은 도덕적 의무감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기준을 세우고 행동하거나 또는 규범을 어기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자제력이 약한 게 약점인 것 같습니다. 매우 보수적이며 변화를 싫어하는 편입니다.

나. 학습능력 및 태도

학습동기가 낮은 편에 속하는 학생이고 공부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평소에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시켜야만 마지못해 공부할 때가 많습니다. 학습에 대한 호기심이 부족한 편이며, 정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습동기가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공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평상시에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공부하기 보다는 닥치는 일들을 시간에 쫓겨 하는 편입니다. 시험은 거의 벼락치기로 급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해야 할 공부를 다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험을 치르더라도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습관화되면 학년이 올라가도 공부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이 높아지기 어렵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담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있고 비교적 마음이 편안

한 상대입니다. 스트레스를 겪게 되더라도 그 영향력이 공부를 하는데 큰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심리상태는 안정적인 편에 속하며 감정변화가 자주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학생입니다.

다. 적성 및 장래 희망

동 학년 학생들 보다 나이가 3살 정도 많아 친구를 사귀는데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름대로 잘 적응하고 친한 친구 한두명 사귀어 상태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가정환경이 열악하여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으며 사설학원 등에서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경제적인 형편을 기대하기 어렵다 보니 최00 학생은 자신이 지금의 환경에서 무엇을 가장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최00 학생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베푸는 마음이 높은 학생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을 정직하다고 믿는 편입니다. 타인들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진실 되고 솔직한 편입니다. 타인의 잘못에 대해 용서하고 너그러운 마음은 보통이지만 자신은 매사에 적극적이며 능란한 사고술로 여기저기를 누비며 살고 싶고 활달하고 화술이 뛰어나고 환경이 수용이 빠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상담관련 직종이나 사회복지사가 되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학생들을 돕고 싶다고 합니다. 여건에 따라 취업 또는 대학진학을 바라고 있고 때에 따라서는 언니가 있는 캐나다에 유학을 가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아직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라. 가족상황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그리고 본인이 있습니다. 모두 북한에서 출생하여 살고 있다가 2003년에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노동일을 했는데 작업반장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나쁘지 않은 생활여건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우리 보다 못한 북한 동포에게 음식을 주는 현상이 너무 잦아 어머니랑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어머니도 북한 동포에게 음식을 몰래 준 것 같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중국으로 가서 2년 정도 정착하여 아이돌보미와 요리

사의 직업을 가지고 생활하면서 언니를 중국으로 타인을 통해서 데려왔고 그리고 3년째 접어들기 전에 저 또한 타인을 통해서 중국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한달 동안 집에서 꼼짝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언니가 베트남을 통해 한국으로 먼저 입국하였고 저와 어머니는 다른 탈북성인 2~3명이 함께 베트남으로 해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오기까지의 상황은 너무나 힘들었고 지금도 내가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을 정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약속 시간이 서로 엇갈려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북한에 있는지 중국에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한번씩 또는 가끔 아버지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합니다. 보고싶고 만나고 싶습니다. 현재 어머니는 경북에서 살고 있고 언니는 캐나다 유학중이고 저는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마. 기타 지도상 유의할 특징

탈북학생 최00 학생을 봤을 때 학교생활 부적응의 문제는 크게 공부하기와 친구사귀기의 어려움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업시간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기초학력수준은 남한 학생보다 조금 떨어지고 학력부진현상은 학년이 올라 갈수록 심해졌다”라고 합니다. 이런 학업부진의 이유는 북한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탈북과정 중 난민생활의 습성으로 틀에 짜여진 한국 학교상황에 적응하기 힘들기 때문이며 남한과 북한의 교육제도의 차이로 한국교육과정을 이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탈북학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기초학력부터 가르쳐 주는 것이 중요하며 학년이 올라 갈수록 자신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기 및 취미를 발견하여 빨리 학교와 지역사회 더 나아가 취업을 할 때 자신의 적성에 맞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다. 본인 스스로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욕구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공부를 시키면 오히려 역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며 자신이 잘 하는 부분을 찾아내어 발전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공부가 힘들지만 친구들과 놀 수 있다면 학교는 그런대로 견딜만한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친구사귀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우선적으로 말투에서 차이

가 나고 또한 의사소통 그리고 유행어도 뜻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가까이 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많은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한 두명의 친구만 사귀는 방법으로 택하여 서로 이해하고 들어주는 친구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교과 선생님들의 탈북학생에 대한 너무 과한 관심은 피해야 할 것이다. 한 사례로 학생이 수업중에 열심히 듣고 있는데 선생님이 북한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하여 학생에게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고 강요한 일이 있다. 학생은 잘 모른다고 말을 해도 계속 학생에게 북한이야기를 강요하는 것은 학생이 학교적응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이다. 본인 스스로 탈북학생이라는 것을 숨기고 열심히 학교생활을 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찬물을 붓는 격이다.

4. 1:1 멘토링 운영내용

가. 지도방법

멘토 학생과의 인간적인 만남을 통하여 학생의 개인적인 성장을 돕고 학생 생활과 관련된 제반 문제 예방과 해결을 제공하는 학습클리닉을 통해 내실 있는 학생상담활동을 전개하여 최00 학생의 다양한 심리·정서적인 문제들을 예방하고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높이며 나아가 올바른 인격형성과 자존감을 회복시켜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적응과 함께 자존감 회복,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신나는 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을 전개하였고 ‘신나는 학습클리닉’은 새로운 나의 발견 파트 20개의 활동지와 변화될 나의 삶의 파트 17개 활동지 활동을 통해 개인의 성장과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프로그램이다. 학교에서는 전문상담교사와 자기성장의 변화 즉 자신이 누구이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 확립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학습방법 즉 교과지도에 있어서는 대학생 학습멘토링을 운영하여 최00 학생이 한국사회의 대학생 문화 그리고 교육을 받는 제도 등에

서 스스로 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지금 보다 더 학업에 열중하여 성적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나. 운영내용

학생의 심리·정서적인 발달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안한 ‘신나는 학습클리닉’을 통해 학생의 인지 및 정의적 특성발달을 강조하여 자존감 및 학교생활의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그리고 탈북학생의 학습력 및 문화적응력 제고를 위한 지원한 가능한 대학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적응력 및 학습 결손량에 따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여 지도하였다.

가. “신나는 학습클리닉”을 통한 상담

- 시간 : 매주 월, 수, 금 (3일) 15:30~17:30
- 장소 : Wee 클래스 상담실

나. 대학생 멘토링을 통한 1:1 학습능력향상 프로그램 운영

- 시간 : 매주 화, 목 (2일) 하루에 2시간
- 장소 : Wee 클래스 상담실, 00대학교, 외부활동

다. 교과지도

대학생 학습멘토링에서는 탈북 학생들의 기초학습 향상에 초점을 두어 지도하는 교과목의 수가 한정되어 있었지만 최00 학생이 대학생 학습멘토링 선생님께 학습하지 않는 교과목에 대한 요구가 있어 교과 보충학습도 할 수 있었다. 대학생 학습멘토링을 1년간 운영되고 있다. 최00 학생은 학습에 대한 욕구는 높지만 북한에서의 교육과 한국에서의 교육방법이 많이 달라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탈북하여 중국 등 제 3국에서 제대로 학습을 배울 기회가 없었기에 장기간의 학습결손을 단기간에 보충하기가 쉽지 않아 초등학교 학급에서부터 지금까지 학급부진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학교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탈북학생에 초점을 맞추지 못함으로 별 효과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최00 학생은 학습부진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와 교육청이 중심이 되어 접근성과 신뢰성이 높은 대학생 학습멘토링을 통해 다양한 학습방법을 실시하여 궁극적으로 최00 학생이 학교적응력을 향상시켜 학교중도탈락을 예방하고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였다. 대학생 학습멘토링을 통해 대학생의 참모습, 그리고 대학생의 문화 및 여가활동을 체험함으로써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1학년 때 보다 학업 성적이 소폭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이번 대학생 학습멘토링 프로그램은 최00 학생의 학교 부적응의 여러 요인 중에서 학습과 정서적 적응 그리고 문화이해의 통합적 접근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하여 본교에서 바람직한 특별프로그램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자 한다.

라. 문화체험활동

문화체험활동의 기회가 적은 탈북학생들에게 유익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자신감과 인내력을 가지게 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며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였다. 사고력과 지적호기심을 배양하고 학교 졸업 후의 행동양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행동 양식을 세련화시키는 등 체험중심의 인성교육이 되었다. 특히 기장문화예절고등학교 1박2일 캠프참여는 최00에게 중요한 캠프가 되었으며 자신이 한국사회에서의 예절과 전통을 배워보는 시간은 앞으로 한국사회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가. 스포츠 및 문화체험행사를 통한 상담

- 4월 등반대회 참석: 이기대 해안로 산책로 걷기
- 5월 기장문화예절학교 참여
- 10월 문화체험행사 : 부산관악제관람
- 10월 해양스포츠체험 : 해양대학교 요트체험행사
- 11월 문화체험행사 : 영화 및 연극 “가디언의 전설” “완득이” “잇츠유”관람

마. 학생변화

최00 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 정서적으로 안정화 시켜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하여 학교성적을 향상시켜 학교생활을 잘하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였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신나는 학습클리닉 과 대학생 학습멘토링이다.

인지, 사회, 신체 발달에 있어서 정서의 절대적인 역할과 더불어, 정서가 자기 의식의 출현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서의 표현은 청소년기 학생들이 내적으로 경험하는 정서와 특정상황에서의 대처 능력과 관련되며, 이는 곧 자아개념, 인지발달, 동기 및 사회적 기술을 포함하는 역동적인 행동영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경우에 탈북청소년은 학교 적응상에서 곤란을 경험하는 등 심각한 정서적 문제와 직면하게 될 것이다. 탈북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의 학업부진, 또래 관계에서의 문제, 충동적이거나 위축된 행동, 학교적응상의 문제 등이 정서와 관련된다. 또한 탈북청소년의 정서와 관련된 경험, 정서의 의미, 정서의 원인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이해하는 것은 또래 집단과 사회적 관계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고, 탈북청소년이 갖는 정서적 문제는 청소년기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도 부적응 요인으로 확대 될 수 있으므로 개인생활에 있어서 정서가 갖는 중요성은 매우 큼을 알 수 있었다.

탈북학생이기 때문에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등의 상황 속에서는 정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또래관계를 통한 자아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자존감 하락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학습결손, 학습부적응으로 나타났고 학교서 대인관계가 매우 소극적이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청소년의 이러한 특성은 환경적 요인으로 인하여 부정적이며 낮은 자아개념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적인 감정으로 숨기기 위해 의식적인 대체를 하거나 자신의 내적인 감정을 숨기기 위한 복잡하고 의식적인 책략을 사용할 능력이 없어 단지 친절한 규범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양식으로 작용하지 못해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신나는 학습클리닉 과 대학생 학습멘토링을 통해 내적인 정서상태와 외적으

로 요구하는 정서표현을 구분하는 능력과 기대되는 상호작용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정서적인 표현을 유용하게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된 것 같다. 정서적 표현의 변화는 긍정적 자아감을 증진시켰으며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 할 수 있고 건강한 학교구성원으로서 발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결과 수업시간 중 학습기술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보였고, 공부하는 목적 및 동기에 있어서는 자아실현 등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계형적인 동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자격증에 대한 관심도 보이며 다양한 직업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자신의 유형과 유형에 관련된 직업이 높은 관심도 보이고 있으며 대부분 흥미유형이 특화되지 않아 꾸준한 직업탐색과 관심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보다 최00학생이 학교생활 및 또래관계에 적응을 잘 하는 편이고 다양한 상을 받음으로써 학습동기도 향상된 것 같다. 하지만 기초학습 부족에 대한 어려움과 공부방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앞으로 강제성 보다는 선택의지가 필요할 것 같다.

5. 1:1 멘토링에 대한 의견

가. 성과

대학생과의 학습멘토링을 통하여 평소 자신이 없던 영어과목과 수학과목에 조금이나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소폭의 성적향상을 보이고 있으며 본인이 좋아하는 과목이 사회과목의 성적은 보통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초반에 반 친구들과의 문제로 인하여 중도탈락 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잘 견뎌서 지금은 학급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있는 편으로 학교에서의 부적응은 많이 낮아 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신나는 학습클리닉을 통한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어 급우간의 관계형성도 증진하였으며 학교선생님들과의 소통관계 특히 자신에게 북한이야기를 해달라는 선생님과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 학교생활에서 활력을 갖게 되었다. 즉 신나는 학습클리닉을 통해서 학교에서의 생활에 긍정적으

로 적응하고 있으며, 학교생활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아 가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멘토링 프로그램은 최00 학생들에게 학교에서의 교사지지를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학교생활의 어려운 점을 자유롭게 상의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최00 학생의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신나는 학습클리닉과 대학생 학습멘토링의 만족도는 높았다. 이후에도 탈북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이 탈북학생들의 학교생활, 교우관계, 선생님과 의 관계 등이 일반적인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멘토링 프로그램이 탈북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력을 향상키는데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

신나는 학습클리닉을 통해 새로운 발견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활동지를 통해 자신의 현재 문제를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 자신을 존중하고 남을 존중하며 남에게 존중받으면서 자신의 소중함과 장점을 잘 알고, 자신의 소질을 계발할 줄 아는 학생이 되기 위한 활동 프로그램 이었는데, 자기발견, 이해활동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만을 연출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온 결과, 주변의 신뢰를 받지 못하게 된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의 소중함과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 변화될 나의 삶도 다양한 간이 검사지와 상담활동을 통해 타인에게 해로움을 끼치지 않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고 주변세계를 통제하고 긍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삶을 얻기 위해 적응하고자 하는 노력과 자신의 일을 회피하지 않고 스스로 책임감 있게 해결하게 하는 태도를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급우들과의 신뢰관계를 개선, 부적응 행동의 가능성을 줄어나감으로써 나와 남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학습에 대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중심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수의 전략적 행동이 요구된다. 학습전략검사과정은 그러한 습관적, 행동적, 전략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년진급에 따라 지능 이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며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의 근간을 이루기도 한다. 또한 본인의 노력과 경험, 그리고 훈련에 의해 충분히 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습전략에서의 장점과 단점을 이해하는 것이 최00학생의 학업발달에 있어서 매우 실제적인 의미를 줄 것으로 생각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신의 학습전략을 보고 놀라워하고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데 올바른 학습전략을 세워 공부하기로 다짐을 하였고 그 결과 뜻밖의 교과에서도 향상된 성적을 얻게 되어 학습부진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다.

나. 한계

심리 정서 지원 분야의 멘토링 사업은 탈북청소년의 심층면접을 통해 북한을 탈출하여 제3국을 거쳐 남한에 이주해 오는 동안의 생활, 남한 이주 초기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남한 사회에서 그들의 사고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심리정서부분에서 탈북청소년의 적응 문제에 큰 한계를 지니게 된다. 그 이유는 첫째, 탈북 청소년의 상담사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탈북청소년 학교정착화는 '일반화'의 힘이 크지 못할 수 있다. 둘째로는 이 프로그램은 시간적 제한으로 인하여 탈북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도모하여 자신의 세계를 그려내는데 있는 만큼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에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동 내용을 기반으로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하여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저희 학교에서 운영한 프로그램의 성과 및 평가는 탈북학생 한명에 의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일 수 있음을 밝힌다. 특별프로그램 신나는 학습클리닉은 탈북학생만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였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학교학생들과 함께 운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즉 탈북학생들은 집단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오히려 이런 것이 학생에게 공동체 의식보다 개인주의로 갈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았다.

이러한 멘토링을 통해 탈북학생들의 학교적응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다보니 학습에 대한 소홀한 점이 있었지만 의외로 탈북학생들의 개인별 성적변화를 볼 때 전반적으로 성적이 향상되기는 하나 무엇보다 학생 개인의 학습동기와 참여도 따라 뚜렷한 편차를 보이며 성적이 향상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조건 학교적응 또는 학급을 해야 하는 당위성보다는 자신의 진로와 맞물려 뚜렷한 목표를 갖고 전전공공할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경험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다. 개선점

심리정서부분을 다루기 위한 신나는 학습클리닉을 통해 탈북청소년의 심리 정서 그리고 사회적 적응의 수준을 활동지를 통해 파악함으로써 이들이 경험 할 수 있는 학교적응상의 문제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남한의 일반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 사회적 적응의 수준과 비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탈북청소년들의 성별, 연령별, 남한거주기간, 경제적 수준에 따라 학교에 대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 탈북청소년의 지원은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부분적으로나마 해답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확인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탈북청소년들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함을 스스로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

탈북청소년의 심리정서를 통해 학교적응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발견함으로써 남한사회 적응에 따르는 스트레스원이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필요한 대처능력을 최대화 하는데 여러 선생님들의 개입이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다. 탈북청소년의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사업(취업) 실천은 이들의 자기효능감을 강화하고 공공기관 환경에서 요구되는 기술을 증진하도록 도우며, 학교에서의 또래들과의 관계를 맺고 나아가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수준까지 다양한 수준의 개인적 대처 능력을 발전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탈북 청소년의 학교 적응은 탈북청소년 개인의 힘만으로는 이루어 질 수 없

다. 탈북청소년의 학교 적응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친구와 학교환경을 포함하는 사회관계가 탈북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즉 개인체계와 가족체계, 친구체계, 그리고 학교체계를 모두 포함한 통합적관점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탈북청소년 - 부모 - 학교 - 지역사회 모두가 개입하고 이들을 연계하여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각 체계와 상호교류하며 학교 적응력을 높이는 데 효과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부 록

- 다문화가족지원법
-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연락처
-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2012.2.1 법률 제11284호 시행일 2012.8.2]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4.4>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담당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신설 2012.2.1>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2.2.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시책 중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제2항에서 이동 2012.2.1>

제3조의2(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2.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과 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012. 다문화교육 관계자 연수 자료집

- ④ 기본계획은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1.4.4]

제3조의3(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여성가족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4]

제3조의4(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설치) 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제3조의2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 2. 제3조의3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의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3.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각종 조사, 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 4. 각종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 5. 다문화가족정책과 관련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 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다루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4.4]

제4조(실태조사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0.1.18>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외국인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개정 2010.1.18, 2011.4.4>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1.18>

제5조(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1.4.4>

제6조(생활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및 언어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1.4.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거주지 및 가정환경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에서 소외되는 결혼이민자등이 없도록 방문교육이나 원격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을 지원하고, 교재와 강사 등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11.4.4>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정보제공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4>

제7조(평등한 가족관계의 유지를 위한 조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4.4>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을 보호·지원할 수 있다.

2012. 다문화교육 관계자 연수 자료집

<신설 2011.4.4>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가정폭력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법률체계 등에 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아니하도록 의견진술 및 사실확인 등에 있어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개정 2011.4.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4.4>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11.4.4>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아동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아닌 자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 2.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3.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5.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7.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⑤ 지원센터에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⑦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위탁·지정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2.2.1]

제12조의2(보수교육의 실시)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내용·기간 및 방법 등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13조(다문화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의2(다문화가족지원사업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이나 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1]

제14조(사실혼 배우자 및 자녀의 처우)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1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1.4.4, 2012.2.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의2(정보 제공의 요청)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결혼이민자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결혼이민자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여 요청할 수 있다.

-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등록 정보
- 2.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화허가 신청 정보

②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법무부장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를 제12조제1항·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

제1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이민자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0.3.26 법률 제10188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신속히 적응·정착하는 데 필요한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대상자”란 이 법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보호금품”이란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4조(기본원칙) ①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법질서에 적응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5조(보호기준 등)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기준은 나이, 세대 구성, 학력, 경력, 자활 능력, 건강 상태 및 재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은 원칙적으로 개인을 단위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를 단위로 할 수 있다.

③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6조(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 ①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취업보호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4.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32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정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통일부차관이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7조(보호신청 등) ①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는 사람은 재외공관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각급 군부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재외공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를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를 직접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통일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가정보원장은 임시 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8조(보호 결정 등) ① 통일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그 보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일부장관과 보호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한 통일부장관은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재외공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재외공관장등은 이를 보호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11조·제13조·제14조·제19조·제19조의2·제22조 및 제26조의2에 따른 보호 및 특례
 2. 그 밖에 사회정착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 및 지원
- ④ 제3항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0조(정착지원시설의 설치)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적응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1조(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는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동안 신원 및 북한이탈 동기의 확인, 건강진단, 그 밖에 정착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12조(등록대장)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 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모든 등록대장을 통합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보존하고 있는 등록대장의 기록 사항을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2012. 다문화교육 관계자 연수 자료집

제13조(학력 인정)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이수한 학교 교육의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14조(자격 인정) ① 보호대상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나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에 상응하는 자격 또는 그 자격의 일부를 인정받을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자격 인정 신청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 또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인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15조(사회적응교육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기본교육 외에 보호대상자에게 거주지에서 별도의 적응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5조의2(지역적응센터의 지정)

① 통일부장관은 제15조제2항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생활정보제공·취업서비스 안내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하도록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시행일 2010.9.27]

제16조(직업훈련) ① 통일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 또는 보호대상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기간은 대상자의 직무능력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7조(취업보호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취업한 날부터 2년간 취업보호를 실시한다. 다만, 사회적 취약계층, 장기근속자 등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취업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업보호 기간은 실제 취업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취업보호대상자”라 한다)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취업보호대상자 임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④ 사업주가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때에는 그 취업보호대상자가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직위, 담당 직무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상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취업을 알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17조의2(취업보호의 제한) ①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 1. 취업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퇴직한 경우
- 2. 근무태만, 직무유기 또는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경우

② 통일부장관은 취업보호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주로 하여금 제17조제3항의 고용지원금을 받게 한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③ 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취업보호를 중지하거나 종료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취업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7조의3(영농 정착지원)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보호대상자에게 영농 교육훈련 또는 농업현장 실습 등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17조의4(세제혜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시행일 2010.9.27]

제18조(특별임용) ①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 등 북한이탈주민으로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시행일 2010.9.27>

② 북한의 군인이었던 보호대상자가 국군에 편입되기를 희망하면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계급, 직책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군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다.

2012. 다문화교육 관계자 연수 자료집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별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시행일 2010.9.27]

제19조(가족관계 등록 창설의 특례)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이하 "남한"이라 한다)에 가족관계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등록기준지를 정하여 서울가정법원에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호대상자의 등록대장 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방법에 준하여 작성한 신분표를 붙여야 한다.

③ 서울가정법원은 제1항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를 한 때에는 해당 등록기준지의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읍·면의 장에게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④ 시·구·읍·면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창설허가 등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야 하고, 주소지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가족관계 등록 신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19조의2(이혼의 특례) ①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 중 북한에 배우자를 둔 사람은 그 배우자가 남한에 거주하는지 불명확한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9조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을 창설한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로 기록된 사람은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이혼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배우자가 보호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통일부장관의 서면을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 서울가정법원이 제2항에 따른 재판상 이혼의 당사자에게 송달을 할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른 공시송달(公示送達)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첫 공시송달 후에 하는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제4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26]

제19조의3(주민등록번호 정정의 특례) ①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시설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람은 거주지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20조(주거지원 등)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는 그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부터 2년간 통일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그 주거지원에 따라 취득하게 된 소유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이하 “소유권등”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시행일 2010.9.27>

③ 제2항에 따른 소유권등의 등기신청은 보호대상자를 대리하여 통일부장관이 한다. 이 경우 소유권등은 양도나 저당권 설정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그 등기신청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동생활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21조(정착금 등의 지급)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이하 “정착금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재화를 포함한다)의 활용 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보로금(報勞金)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착금품과 보로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정착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3.26]

제22조(거주지 보호)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정착지원시설로부터 그의 거주지로 전입한 후 정착하여 스스로 생활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항을 해결하거나 그 밖에 자립·정착에 필요한 보호를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호 업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22조의2(전문상담사제도 운영) ① 통일부장관은 거주지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적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전문상담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12. 다문화교육 관계자 연수 자료집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사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통일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시행일 2010.9.27]

제23조(보고 의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기(半期)마다 보호대상자의 정착 실태 등을 파악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24조(교육지원) ①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나이, 수학적능력(修學能力), 그 밖의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상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① 통일부장관은 탈북 청소년의 일반학교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착지원시설 내에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교육기간, 프로그램 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3.26] [시행일 2010.9.27]

제25조(의료급여)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3.26]

제26조(생활보호) 제11조에 따른 보호가 종료된 사람 중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호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26조의2(국민연금에 대한 특례) ① 제8조에 따른 보호 결정 당시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보호대상자는 「국민연금법」 제6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1. 60세가 되기 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되는 사람: 60세가 되는 날
 2. 60세가 된 후에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연금의 금액은 「국민연금법」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250에 해당하는 금액에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5년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년(1년 미만은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마다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다.

③ 보호대상자의 국민연금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26]

제26조의3(생업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26조의4(자금의 대여 등) 보호대상자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에 따른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상한액 등에 있어 특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0.3.26] [시행일 2010.9.27]

제27조(보호의 변경) ①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1.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고의로 국가이익에 반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경우
 3. 사망선고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북한으로 되돌아가려고 기도(企圖)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의 중지 또는 종료나 제5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을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호 및 정착지원을 중지 또는 종료하거나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해당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야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법무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이를 통일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행일 2010.9.27>
- ⑤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게 보호변경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시행일 2010.9.27>

[전문개정 2010.3.26]

제28조(신고의무 등)

보호대상자는 최초의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5년간 주소, 직업 또는 근무지가 변동된 경우에

2012. 다문화교육 관계자 연수 자료집

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신고서 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을 거쳐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3.26]

제29조(비용 부담)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정착지원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국가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보호 업무의 비용을 매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며,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지급하거나 초과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①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임직원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업무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공고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 지원사업
2.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사업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직업훈련에 필요한 사업
4.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장학사업
5.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전문상담인력의 양성과 전문상담사업
6.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민간단체 협력사업
7.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8. 북한이탈주민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구축사업

9.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단에 위탁하는 사업

⑤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이사장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제청으로 통일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와 감사의 임명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⑥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두며,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⑦ 정부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 ⑧ 재단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4항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 ⑨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 ⑩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
 - 2. 제8항에 따른 차입금
 - 3. 제9항에 따른 기부금품
 - 4. 그 밖의 수익금
- ⑪ 재단이 해산한 때에 잔여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다.
- ⑫ 통일부장관은 재단을 지도·감독한다.
- ⑬ 재단의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⑭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⑮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6> 그 밖에 재단의 설립·구성·운영과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6] [시행일 2010.9.27]

제3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26]

제32조(이의신청) ①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보호대상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일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33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및 지원을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따른

2012. 다문화교육 관계자 연수 자료집

업무 외의 목적에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받은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0.3.26]

제34조(과태료) ① 제30조제14항을 위반하여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통일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0.3.26] [시행일 2010.9.27]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연락처」

일반지정기관 116곳 (거점-30, 일반-86)

연번	거점운영기관명 / 일반운영기관	전 화	주 소
1	서울교육대학교 다문화교육연구원	02-3475-2324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50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661 신구대학 평생교육관 302호
	신명실업학교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동 277-15
	국제외국인센터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 419-32 계명빌딩 402호
2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031-467-804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8동 400-10
	영등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1동 465-2 신길종합사회복지관 4층
	회원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2동 476-134
	시립신목종합사회복지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1동 931
3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02-2173-226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동 270 한국외국어대학교
	성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5가 14 노동사목회관
	마포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88-19
	인제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원		서울특별시 중구 저동2가 64(인당관)
4	동의대학교 부산다문화사회통합 센터	051-890-112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995
	부산시 연제구청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55
	(사)재한외국인사회통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동1가 1-10 부산데파트 426호
	(사)함께하는 다문화네트워크 부산지사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1동 442-11 중원빌딩 2층
5	울산대학교 울산광역시다문화가 족지원센터	052-274-3185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산29 산학협동관 516호
	울주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376-33
	울산푸른학교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3동 498-2 울산푸른학교 2,3층
	울주 온산농협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230-10
6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032-899-1525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 930-3
	송림종합사회복지관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1동 193-1
	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경기도 김포시 870번지
	김포다문화가정지원센터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109-28 대신B/D 4층
	(사)경기글로벌센터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70-16 동부천전화국 4층

2012. 다문화교육 관계자 연수 자료집

연번	거점운영기관명 / 일반운영기관	전 화	주 소
7	안산시외국인주민센터	031-481-329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천길 67(원곡동 991-1)
	시흥시 외국인복지센터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1366-1 시화공단 3나 804호
	다문화가족 행복나눔센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49-1
8	계명대학교 다문화사회센터	053-580-8891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2800번지
	동촌종합사회복지관		대구광역시 동구 입석동 964-8
	달성 옥포농협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본리리 2403-1
9	영남대학교 국어생활상담연구센터	053-810-3561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214-1
	신포항 농협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청하면 미남리 387-5
10	경북대학교 낙동강연구원	054-530-1991	경상북도 상주시 가장동 386 경북대 상주캠퍼스 산학협력관 306호
	안동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상북도 안동시 옥동 974
	울진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상북도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363-3
	산동농협		경상북도 문경시 산양면 불암리 54- 1
11	목원대학교 다문화사회통합연구 교육센터	042-829-7288	대전광역시 서구 목원길 21
	대전광역시 동구청		대전광역시 동구 원동 85-26
	대덕종합사회복지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동 48-2
12	한서대학교 어학교육원	041-660-1705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360
	당진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충청남도 당진군 수청리 979 신터미널
	화성농협 비봉지소		충청남도 청양군 비봉면 록평리 72-7
	홍성사회복지관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
	웅천 농협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읍 대창리 713-2
13	건양대학교 국제교육원	041-730-5135	충청남도 논산시 대학로 119
	서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183-35
	논산시 상월면 주민자치센터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백일헌로 1049
	아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동 1626
	연기다문화센터		충청남도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17-4, 3층
14	(사)이주가족복지회 광주북구다문화가족 지원센터	062-430-2963	광주광역시 북구 신안동 237-5 용봉회관 2층
	그루터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1동 941-14
	화순농협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삼천리 620-2
	첨단종합사회복지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56-2

연번	거점운영기관명 / 일반운영기관	전 화	주 소
		옥과 농협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리문리 224-2
		장성 삼서농협	전라남도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815
15	목포대학교 국제교류교육원	061-450-2950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무안로 560
	(변경)영암종합사회복지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춘양리 525
	영산포 농협		전라남도 나주시 이창동 189-2
	별교 농협		전라남도 보성군 별교읍 별교리 888-3
	완도 신지 농협		전라남도 완도군 신지면 대평리 757-2
16	수원중앙복지재단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031-224-6075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가 72-2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734 유엔아이센터 4층
	평택대학교 다문화가족센터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111
	군포이주와 다문화센터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224-11
17	국경없는마을·광주 지부 광주이주민센터	031-797-2688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33-32
	이천 다사랑 다문화센터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87-1 남강빌딩 1층
	CLC 이주민센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736 보광빌딩4층
	양평 양서농협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4리 559-45
18	포천다문화가정지원 센터	031-544-0611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159-3 우덕프라자 201호
	구리 다문화교육센터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05-19 남양저축은행별관 2층
	일산 다문화교육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6 일산프라자 604호
	수동 농협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운수리 95-63
19	순천외국인한글학교	061-725-1905	전라남도 순천시 연향동 1509
	쌍봉 종합사회복지관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65
	주암면 복지회관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면 구산리 780
	여수다문화복지원		전라남도 여수시 관문동 870-1
20	강원대학교 한국어문화원	033-250-8137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1 강원대학교 인문대학
	가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 38
	동횡성 농협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우항1리 767
	홍천 서석 농협		강원도 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214

2012. 다문화교육 관계자 연수 자료집

연번	거점운영기관명 / 일반운영기관	전 화	주 소
21	강릉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3-648-3019	강원도 강릉시 교1동 1785
	속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234-2
22	마산대학 평생교육원	055-230-1125	경상남도 마산시 내서읍 용담리 100
	거제 YWCA		경상남도 거제시 아주동 290
	(사)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52-7
	창녕 농협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술정리 172-5
23	진주교육대학교 경남다문화사회연구소	055-740-1170	경상남도 진주시 신안동 380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30-2 고성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		경상남도 사천시 정동면 고읍리 600-1 한보2차상가 B-1
	(사)산청여성가족지원센터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450-6, 2층
	의령농협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중동 391-4
	24	충북여성단체협의회	043-255-7221
음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817-12 여성회관 2층	
보은 농협		충청북도 보은군 보은읍 성주리 189	
25	세명대학교 한국학센터	043-649-1744	충청북도 제천시 세명로 2가 117
	충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 1454-1
	단양 소백농협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상리 409
	단양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충청북도 단양군 별곡리 639-1 단양여성발전센터 2층
26	제주이주민센터	064-712-1141	제주시 노형동 727번지 은혜빌딩 6층
	동제주 종합사회복지관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409-2
	국제가정문화원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554-1 하나로마트 2층
27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64-762-0211	서귀포시 동홍동 353-1번지
	동부 노인복지회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229-1
	성산농협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106-3
28	우석대학교 다문화센터	063-290-1036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로 333

연번	거점운영기관명 / 일반운영기관	전 화	주 소
		순창군청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315-4
		장계 농협	전라북도 장수군 장계면 장계리 256-3
	사회복지법인 천주교인보회		전라북도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421-1, 진안성당내
		운봉 농협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231
		고산 농협	전라북도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 881
29	원광대학교 익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850-6046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344-2
	정읍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448-8(주소 변경)
		선운산 농협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무장리 330
	군산대학교 건강가정지원센터		전라북도 군산시 미룡동 대학로 558 자연과학대 3호관 2층
30	(재)한국이민정책 발전재단:화상교육	02-2643-879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1동 122-19 정풍빌딩1층

「2012.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총 203개소)

(2012. 4월 30일 기준)

센터명		주 소	연락처
1	서울 (23)	종로구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6-2 동부여성문화센터 3층	02-764-3521
2		용산구 서울시 용산구 한남2동 728-2 용산여성문화회관 1층	02-792-9175
3		성동구 서울시 성동구 홍익동 373-1	02-3395-9445
4		광진구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472-1 광장종합사회복지관내 3층	02-458-0666
5		동대문구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경희대학교생활과학대학223호	02-957-1073
6		중랑구 서울시 중랑구 면목본동 62-2	02-435-4149
7		성북구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5가 14 노동사목회관	02-953-0468
8		강북구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410-293 강북구 보육여성정보센터 4층	02-945-7381
9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 창동 303 구민회관 2층	02-990-5432
10		노원구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569-19 가온빌딩 4층	02-979-3502
11		은평구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468-2 성지빌딩 3층	02-376-3731
12		서대문구 서울시 서대문구 북가좌2동 333-5	02-375-7530
13		마포구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88-19번지	02-3142-5027
14		양천구 서울시 양천구 신월5동 52-2 신월5동 주민센터 3층	02-2699-6900
15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 1159-4 우장산주민센터 3층	02-2606-2037
16		구로구 서울시 구로구 구로3동 1129-6	02-869-0317
17		금천구 서울시 금천구 시흥본동 841 시흥본동자치센터	02-803-7743
18		영등포구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1동 동사무소 4층	02-846-5432
19		동작구 서울시 동작구 사당2동 1136-1번지 3층	02-599-3260
20		관악구 서울시 관악구 숙고개길 13(봉천동 1571-1번지) 1층	02-883-9383~4
21		강남구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4-2	02-3414-3346
22		송파구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127-1	02-403-3844
23		강동구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58 천호2동주민센터 5층	02-473-4986

센터명		주 소	연락처	
24	부산 (8)	진구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동 653-14 2층	051-817-4313
25		동래구	부산시 동래구 사직2동 사직북로 77(594-8)	051-506-5766
26		남구	부산시 남구 수영로 530 여성회관	051-610-2027
27		북구	부산시 북구 금곡동 810-1(북구 효열로 144)	051-365-2211
28		해운대구	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58-2	051-702-8002
29		사하구	부산시 사하구 신평 1동 262-24번지 임호빌딩 2층	051-205-8345
30		사상구	부산시 사상구 학감대로 95 여성문화회관	051-320-8344
31		기장군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중앙로 208 기장종합사회복지관	051-723-0419
32	대구 (7)	동구	대구 동구 안심로 300번지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유치원 4층	053-961-2202~3
33		서구	대구 서구 원대동3가 1115-5	053-341-8312
34		남구	대구 남구 봉덕 3동 624-14번지	053-475-2324
35		북구	대구 북구 관음동 1383-15번지(3층)	053-327-2994
36		수성구	대구 수성구 두산동 보람길 30번지	053-764-4317
37		달서구	대구 달서구 신당동 1000 계명대 제2백은관 205-2,3호	053-580-6819
38		달성군	대구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553-41 5층	053-637-4374
39	인천 (8)	중구	인천 중구 도원동 28-34 인천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2-889-2594
40		남구	인천 남구 주안6동 972-1 4층(동산빌딩 4층)	032-875-1577
41		연수구	인천 연수구 청학동 527-24(4층)	032-851-2740
42		남동구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94-2	032-467-3912
43		부평구	인천 부평구 갈산동 375-1	032-511-1800
44		계양구	인천 계양구 계산동 906-1 3층	032-552-1016
45		서구	인천 서구 석남동 325 서부여성회관 1층	032-569-1540
46		강화군	인천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13-2(구보건소 3층)	032-933-0980

2012. 다문화교육 관계자 연수 자료집

센터명		주 소		연락처
47	광주 (4)	서구	광주 서구 양3동 385-20	062-369-0003
48		남구	광주 남구 월산동 926-2	062-351-5432
49		북구	광주 북구 신안동 237-5 용봉회관2층	062-363-2963
50		광산구	광주 광산구 송정동 802-4	062-954-8004
51	대전 (4)	동구	대전 동구 자양동 155-3 우송대학교 정례원 2층	042-630-9945~6
52		중구	대전 중구 선화동 290-11	042-223-7959
53		유성구	대전 유성구 관평동 767번지	042-252-9997
54		대덕구	대전 대덕구 오정동 74-4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관 3층	042-639-2664
55	울산 (4)	중구	울산 중구 성남동 57-17, 3층	052-248-6007~8
56		남구	울산 남구 옥동 336-2 가족문화센터 A동 3층	052-274-3185
57		동구	울산 동구 서부동 582-5번지 미포복지회관 5층	052-232-3357
58		울주군	울산 울주군 범서읍 점촌5길 39-7 중부종합 사회복지관 구영관 2층	052-263-6881
59	경기 (29)	수원시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102-1 수원대리구청 1층	031-257-8504
60		성남시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2동 2661 신구대학 평생교육원302호	031-740-1175
61		고양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57번지 로데오탑202호	031-938-9801
62		부천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1동 394-2 복사골문화센터 509호	032-320-6391
63		안양시	경기 안양시 동안구 달안동 1111번지 동안문화관 3층	031-8045-5705
64		안산시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2 하늘법조빌딩 412호	031-439-2209
65		용인시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286 처인구청 3층	031-323-7133
66		의정부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2동 564번지 경민빌딩 1층	031-878-7880
67		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159-7 남양주시청 제2청사 2층	031-590-8214
68		평택시	경기 평택시 팽성읍 남산리 59-7	031-650-2660
69		광명시	경기 광명시 광명5동 273-4(너부대로 321번길 15-3)	02-2060-0453
70		시흥시	경기 시흥시 정왕동 1823-2번지 상경빌딩 4층	031-319-7997

센터명		주 소	연락처	
71	경기 (29)	군포시	경기 군포시 청백리길 22번지	031-395-1811
72		화성시	경기 화성시 병점동 734번지 4층	031-267-8785
73		파주시	경기 파주시 금촌동 782-4 (신흥대학 파주교육원)	031-949-9164
74		이천시	경기 이천시 중리동 187번지 종합복지타운	031-631-2260
75		구리시	경기 구리시 인창동 527-45	031)556-4139
76		김포시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3번길 13-17(사우동 262) 평생학습센터 여성회관 1층	031-996-5923
77		포천시	경기 포천시 호국로 1007(선단동) 대진대학교 박물관 2층	031-532-2065~66, 031-532-2068
78		광주시	경기 광주시 송정동 115-4	031-798-7141
79		안성시	경기 안성시 봉남동 349-2 안성종합사회복지관	031-677-7191
80		의왕시	경기 의왕시 오전동 99-1	031-429-4782~4
81		양주시	경기 양주시 남방동 2-22	031-848-5622
82		오산시	경기 오산시 원동 374-5	031-372-1335
83		여주군	경기 여주군 여주읍 흥문리 현대A상가3층	031-886-0327
84		양평군	경기 양평군 양평읍 창대리 700-3	031-775-5951
85		동두천시	경기 동두천시 중앙로 110-18 아름다운문화센터 3층	031-863-3822
86		가평군	경기 가평군 가평읍 향교로 38 행정정보관 2층	070-7510-5876
87		연천군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2리 33-15 읍민회관 내	031-835-1107
88		강원 (14)	춘천시	강원 춘천시 효자동 708번지
89	원주시		강원 원주시 명륜2동 705 명륜종합사회복지관	033-765-8135
90	강릉시		강원 강릉시 교1동 1785	033-648-3019
91	동해시		강원 동해시 천곡동 808-1 동해시청 제1별관 1층	033-535-8378
92	태백시		강원 태백시 장성동 보드미길 40 태백시 근로복지관 3층	033-554-4003 070-4103-4006
93	속초시		강원 속초시 영랑동 234-2	033-638-3523
94	홍천군		강원 홍천군 홍천읍 신장대리 51-20	033-433-1925
95	횡성군		강원 횡성군 횡성읍 어수로46	033-344-3459

2012. 다문화교육 관계자 연수 자료집

센터명		주소	연락처
96	강원 (14)	영월군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2리 950-5 KT 2층	033-372-4769
97		평창군 강원 평창군 평창읍 하리113-1 평창군문화복지센터 2층	033-332-2063, 2064
98		정선군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16	033-562~3-3458
99		철원군 강원 철원군 갈말읍 신철원리 710-4	033-452-7800
100		양구군 강원 양구군 양구읍 상리 239-7 양구행복나눔센터 2층	033-481-8663
101		인제군 강원 인제군 인제읍 남북리 388 하늘내림센터 1층	033-462-3651
102	충북 (12)	청주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2가 97 정우빌딩 3층	043-223-5253
103		충주시 충북 충주시 연수동 1454-1	043-856-2253
104		제천시 충북 제천시 교동 90-14	043-643-0050
105		청원군 충북 청원군 남일면 효촌리 92-2 청원군보건소 내 2층	043-293-8887
106		보은군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30. 3층	043-544-5422
107		옥천군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정리 439 다목적회관 2층	043-733-1915
108		영동군 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388-1	043-745-8489
109		증평군 충북 증평군 장동리 785 구보건소 별관	043-835-3572
110		진천군 충북 진천군 진천읍 벽암리 570-1 생거진천종합복지관	043-537-5431
111		괴산군 충북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 675-2 여성회관 1층	043-832-1078
112		단양군 충북 단양군 단양읍 별곡리 639-1번지 (2011. 11. 지방비센터 지정)	043-421-6200
113		음성군 충북 음성군 음성읍 읍내리 817-12(여성회관 2층)	043-873-8731
114	충남 (15)	천안시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2동 1519번지백석대학빌딩11층	070-7733-8334~5
115		공주시 충남 공주시 중동 321	041-856-0883
116		보령시 충남 보령시 명천동 413	041-936-8506
117		아산시 충남 아산시 온천동 94-6 4층	041-548-9779
118		서산시 충남 서산시 동문동 207-11번지 5층	041-664-2710
119		논산시 충남 논산시 취암동 1048-7	041-735-5810

센터명		주 소		연락처
120	충남 (15)	금산군	충남 금산군 금산읍 상리 24-2	041-750-3990
121		연기군	충남 조치원읍 교리 9-1	041-862-9337~8
122		부여군	충남 부여군 부여읍 나성북로 17번지 (전지명 : 부여읍 구아리 110번지)	041-835-2480
123		서천군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187-15 2층	041-953-1911
124		청양군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14-1 (약수터길11)	041-944-2333
125		홍성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701 홍성사회복지관내	041-634-7432
126		예산군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727번지 2층	041-334-1368
127		태안군	충남 태안읍 남문리 712-13	041-670-2396
128		당진군	충남 당진시 당진중앙2로 229-7 상가 2층	041-358-3673
129		전북 (14)	전주시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639-9
130	군산시		전북 군산시 축동1길 15-2 군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63-443-0053
131	익산시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460 원광대학교 생활과학대학 2층	063-850-6046
132	정읍시		전북 정읍시 수성동 448-8	063-531-0309
133	남원시		전북 남원시 동충동 173-2	063-635-5474
134	김제시		전북 김제시 검산동 1031번지 지평선어울림센터 3층	063-545-8506
135	완주군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우석대학교 종합관 3층 5310호	063-290-1298
136	진안군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285-8	063-433-4888
137	무주군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628	063-322-1130
138	장수군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리 449-4	063-352-3362
139	임실군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36-2 새마을금고 2층	063-642-1837
140	순창군		전북 순창군 순창읍 장류로 192	063-652-3844
141	고창군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촌리 233-5 1층	063-561-1366
142	부안군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536-15	063-580-3941~ 3
143	전남 (20)	목포시	전남 목포시 산정동 1044-726번지	061-278-4222
144		여수시	전남 여수시 미평동 591-9 여성문화회관	061-690-7160 061-690-8388
145		순천시	전남 순천시 덕월동 순천제일대학길 17번지 평생교육관2층	061-740-1415 061-741-1050 061-742-1050
146		나주시	전남 나주시 이창동 162-6 우리빌딩 4층	061-331-0709
147		광양시	전남 광양시 중동 1318-2 광양시의회청사 4층	061-797-6832
148		담양군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116-1(09지방비 ->신규독립)	061-383-3655

2012. 다문화교육 관계자 연수 자료집

센터명		주 소	연락처
149	전남 (20)	곡성군 전남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131번지 (곡성읍사무소 2층)	061-362-5411
150		고흥군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 832번지	061-832-5399
151		보성군 전남 보성군 보성읍 동인길 18-6	061-852-2664
152		화순군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리 243 부영3차상가 304호	061-375-1057
153		장흥군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61 장흥종합사회복지관 4층	061-864-4810
154		강진군 전남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291-2	061-433-9004
155		해남군 전남 해남군 해남읍 해리 159-5 번지	061-534-0017
156		영암군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2178-2 한마음회관 2층	061-463-2929
157		무안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885-1	061-452-1813
158		함평군 전남 함평군 함평읍 함평리 154-1	061-324-5431
159		영광군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 155번지 수협건물 3층	061-353-7999
160		장성군 전남 장성군 장성읍 기산리 388	061-393-5420
161		완도군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 1248-14	061-554-3400
162		진도군 전남 진도군 진도읍 성내리 옥주길 7-2	061-544-9993
163	경북 (22)	포항시 경북 포항시 북구 우현동 우현구획 정리지구 4B 1L 여성문화회관	054-270-5556
164		경주시 경북 경주시 사정동 1-26 서라벌문화회관 2층	054-743-0770
165		김천시 경북 김천시 대광동 1347-1	054-439-8279
166		안동시 경북 안동시 옥동 974 안동종합사회복지관	054-853-3111
167		구미시 경북 구미시 형곡동 314-3	054-464-0545
168		영주시 경북 영주시 가흥1동 1385 영주가흥종합사회복지관내	054-634-5431
169		영천시 경북 영천시 화룡동 199-6번지 대천빌딩 2층	054-334-2882
170		상주시 경북 상주시 무양동 1-162	054-531-1342~4
171		문경시 경북 문경시 호계면 별암리 산 6번지 문경대학 내	054-554-5591
172		경산시 경북 경산시 경산로 131(사정동35-4)서부1동 주민센터옆	053-816-4071
173		의성군 경북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502 -1	054-832-5440
174		청송군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316	054-872-4320
175		영양군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158-6	054-683-5432
176		영덕군 경북 영덕군 영덕읍 화개리 608	054-730-7383
177		청도군 경북 청도군 화양읍 동천리 457 청소년수련관 3층	054-373-7421

센터명		주 소		연락처
178	경북 (22)	성주군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161-1성주군문화예술회관내	054-931-0537
179		칠곡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2리 523-60번지 새마을회관 2층	054-975-0834
180		예천군	경북 예천군 예천읍 대심리 64-12 2층	054-654-4321
181		봉화군	경북 봉화군 봉화읍 내성리 285 (결혼이주여성 전용쉼터내)	054-673-9023
182		울진군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 363-3 울진종합사회복지관	054-789-5414
183		고령군	경북 고령군 고령읍 왕릉로 55 (고령군청 별관 내)	054-956-6336
184		군위군	경북 위군군 위읍 동부리 606번지	054-383-2511
185	경남 (17)	창원시	경남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 20-8 창원시여성회관창원관 1층 다문화가족지원센터	055-225-3951
186		창원시마산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3가 4-190 마산YWCA 1층	055-245-8746
187		진주시	경남 진주시 신안동 419-4번지	055-749-2325
188		통영시	경남 통영시 무전동 464-1	055-640-7780~2
189		사천시	경남 사천시 동금동 405-6	055-832-0345
190		김해시	경남 김해시 부원동 623-2 (구 보건소2층)	055-329-6349
191		밀양시	경남 밀양시 중앙로 268-1 여성회관 1층 내	055-356-8875
192		거제시	경남 거제시 아주동 290 근로자복지회관 2층	055-682-4958
193		양산시	경남 양산시 남부동 95번지	055-382-0988
194		함안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121-1 함안군새마을지회	055-583-5430
195		고성군	경남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230-2	055-673-1466
196		남해군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남해군종합사회복지관 2층	055-864-6965
197		하동군	경남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종합사회복지관 4층	055-880-6530
198		산청군	경남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 450-6	055-972-1018
199		함양군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67-4	055-962-2013
200		거창군	경남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683번지	055-945-1365
201		합천군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337	055-930-4738
202	제주 (2)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727 은혜빌딩 6층	064-712-1140
203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303-12번지	064-762-1141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tarting from the top right of the notebook illustration and extending across the page. There are 20 dotted lines in total.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is a solid horizontal line.

MEMO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tarting from the top right of the notebook illustration and extending across the page. At the bottom of the page, there is a solid horizontal lin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handwriting practice.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from the left margin to the right edge of the page.

2012. 다문화교육 관계자 연수

발행일 : 2012년 5월 16일

발 행 : 김해도서관

(621-040) 경상남도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72



TEL : 055-320-5584~7

FAX : 055-320-5588

<http://www.gimhaelib.go.kr>

※ 본 자료집은 비매품임
